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2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상향(박희승의원안, 이재명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3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6. 27.
-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

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상향(박희승의원안, 이재명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대중교통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도서 등	-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현행	박희승의원안, 이재명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 <tr> <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 <tr> <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 <tr> <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 <td>- 신용카드</td><td>15%</td></tr> <tr> <td>-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 <tr> <td><신 설></td><td></td></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신 설>		□ 지역화폐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 <tr> <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 <tr> <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 <tr> <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 <td>- 신용카드</td><td>15%</td></tr> <tr> <td>-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 <tr> <td>- <u>지역화폐 사용분</u></td><td>50% (박희승의원안) 80% (이재명의원안) 100% (신영대의원안)</td></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 <u>지역화폐 사용분</u>	50% (박희승의원안) 80% (이재명의원안) 100% (신영대의원안)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신 설>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 <u>지역화폐 사용분</u>	50% (박희승의원안) 80% (이재명의원안) 100% (신영대의원안)																																

현행				박희승의원안, 이재명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 공제한도				○ 공제한도			
				- 박희승의원안·신영대의의원안: (현행과 같음)			
				- 이재명의의원안: <u>추가한도 100만원 신설</u>			
(단위: 만원)				(단위: 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24년 소비증가분		100	
<신설>				지역화폐		100	

* 박희승의원안 2024. 6. 27. 제출(의안번호 1029), 이재명의의원안 2024. 9. 10. 제출(의안번호 3844), 신영대의의원안 2024. 10. 31. 제출(의안번호 5111)

□ 3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3)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박희승의원안), 80%(이재명의의원안), 100%(신영대의의원안)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 중 박희승의원안과 신영대의의원안은 지역화폐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재명의의원안은 지역화폐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2020년 5월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할인판매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2024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191개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기도, 충청북도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양양시 등 46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속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지자체	발행	미발행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 25개 지자체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 부산 남구	14개 기초지자체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	9개 기초지자체
광주	광주광역시	5개 기초지자체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 대덕구	4개 기초지자체
울산	울산광역시	5개 기초지자체
대구	대구광역시	8개 기초지자체

지자체	발 행	미발행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강원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청북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청남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라북도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라남도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상북도
경남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Voucher/screen.do>)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제도는 2018년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4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 총 발행규모는 20조 9,000억원에 달함.

[최근 7년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규모]

(단위: 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규모	100억	884억	6,689억	1조2,522억	7,000억	3,522억
발행지원 규모 ¹⁾	1,000억	2.3조	9.6조	20.2조	18.4조	13.7조
총 발행 규모 ²⁾	1,264억	3.2조	13.3조	23.6조	27.2조	20.9조

주: 1) 발행지원 규모: 국비 지원을 받아 발행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2) 총 발행 규모: 발행지원 규모 + 지자체 자체 발행 규모

자료: 행정안전부

□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적용함.

지역사랑상품권 중 카드형 상품권은 직불카드에 포함되고, 지류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은 현금영수증으로 분류되어 각각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추가 공제한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3건의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금액에 대하여 현행 30%의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50%, 80% 또는 100%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로 음식점, 유통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촉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의 영업이익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계속된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통해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1.5%, 체크카드 0.25~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50% 이상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의 도입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적인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과 추가 공제한도를 적용함.

현행법상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사용분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전통시장 소비가 감소하고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둘째, 2023년 기준 20.9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고려할 때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음.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2025년도에는 그 규모가 2018년 대비 2배 이상인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2025년도에는 국세감면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총 78조 1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감면을 역시 15.9%로 최고수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⁴⁾.

셋째, 개정안은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2022년도 귀속소득 기준 33.6%에 달하는 면세자⁵⁾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역화폐사용분에 대해 50%, 80% 또는 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국세감면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 세법 등에 따른 조세지출의 합을 의미하고, 국세감면율은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칭하며, 국세감면을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을 산술평균에 0.5%를 더한 값을 말함.

5) 2022년 귀속소득 기준 33.6%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공제항목별 사용분에 해당 항목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뒤 현행법 제126조의2제2항제6호6)의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식을 구성한 목적은 전체 소비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소비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함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차감금액 산식을 계산할 경우 지역화폐사용분에 대해 50% 또는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도 출되므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자구 수정이 필요함.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000만원(최저사용금액 250만원)인 근로소득자⁷⁾가 1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100만원을 소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text{최저사용금액} \times 100\text{분의 }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 \text{도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3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 \text{도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3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40$

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로 각각 100만원을 소비하여 총 3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함.

현행법에 따라 산출한 소득공제금액은 20만원으로, 최저사용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 소득공제율인 40%를 적용한 20만원이 최종 공제금액이 되는 것임.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박희승의원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은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인 50만원에 50%의 공제율을 적용한 25만원이 도출되어야 하고, 이재명의원안의 경우 80%의 공제율을 적용한 40만원이 도출되어야 함.

그런데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면 박희승의원안의 경우 5만원, 이재명의원안에 따르면 20만원이 도출되어 지역화폐사용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감산식 오류로 현행법상 공제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이 도출됨.

따라서 지역화폐사용분에 대해 더욱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안 제126조의2제2항제6호다목 등 일부 산식 수정이 필요함.

7) 면세자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함

[지역화폐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반영한 자구 수정]

현행	자구 수정안
다. 최저사용금액이 <u>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u>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u>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u>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u>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u>	라. 최저사용금액이 <u>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u>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u>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50(박희승의원안) 또는 80(이재명의원안) 또는 100(신영대의원안)</u>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u>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50(박희승의원안) 또는 80(이재명의원안) 또는 100(신영대의원안)</u>

현행	자구 수정안
<신설>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 \text{도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3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 \text{도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3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40$

문의처

02)6788-5154